

의안번호	제 681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 숙 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8월 21일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숙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17년 8월 21일

발 의 자: 이숙애, 정영수, 이종욱,
임헌경, 윤홍창, 최광욱,
김영주

1. 개정이유

조례명을 “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” 로 개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,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용료 면제 및 감액 대상을 “어린이집” 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 변경: 조례명 중 “공공기관” 을 “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 으로 함
- 나. 조례명 변경에 따라, 제1조,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제1항 및 제2항,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공공기관” 을 “직속기관 등” 으로 함(안 제1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)

다. 제2조의 제목 “(정의)” 를 “(적용범위)” 로 변경하여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

라. 제6조의 사용료 면제 및 감액 사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 을 “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” 으로, “유치원 및 학교” 를 “유치원, 학교 및 어린이집” 으로 변경함(안 제6조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나. 관계법령: 붙임

다. 비용추계서: 붙임

라. 관계부서 협의: 협의완료(도교육청 재무과 세입재산담당)

마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39호

○입법예고 주요의견: 별첨자료 1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본청”이라 한다)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(이하 “직속기관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 적용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각각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등”으로, “공공기관”을 “해당 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”으로, “유치원 및 학교”를 “유치원, 학교 및 어린이집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공공기관”을 각각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각각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청 <u>공공기관</u>의 시설·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「<u>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</u>」에 따라 설치된 <u>충청북도교육청</u>(이하 “본청”이라 한다) 직속기관 및 <u>교육지원청 소속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사용대상) ① <u>공공기관</u>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 교육활동, 교직원복지,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<u>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</u>」에 따라 설치된 <u>충청북도교육청</u>(이하 “본청”이라 한다) <u>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</u>(이하 “<u>직속기관 등</u>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 적용한다.</p> <p>제3조(사용대상) ① <u>직속기관 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·설비 일부를 교직원·기관·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5조(실비 징수)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학생교육활동,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, 평생교육, 각종 행사 등으로 공공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숙박비, 식비, 교재비, 재료비, 연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실험기구, 교구,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등을 제작·공급 하는 때에는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유치원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아 또는 학생 관련 교육 행사
2. 3. (생략)

③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제5조(실비 징수) ① 직속기관 등-----

-----해당 기관-----

-----.

②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제6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) ①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1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-----유치원, 학교 및 어린이집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공공기관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의 행사

5.·6. (생략)

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,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및 제천학생회관의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징수한다.

1. ~ 6. (생략)

제8조(시설·설비 등의 사용절차 등) ① 공공기관의 시설·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, 사용조건,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,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운영 및 시설·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4. 직속기관 등-----

----- 직속기관 등--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②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시설·설비 등의 사용절차

등) ①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② 직속기관 등-----

-----.

관계 법령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<개정 2011.6.7.>

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6.7., 2011.8.4., 2016.2.3., 2017.3.14.>

1. 국공립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2.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사회복지법인“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3.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4. 직장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)
5. 가정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6. 협동어린이집 :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)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7. 민간어린이집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

[전문개정 2007.10.17.]

[제목개정 2011.6.7.]

【별첨자료 1】

입법에고 접수의견

(의견 제출기관: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세입재산담당)

※ 도내 지방자치단체 감면현황 및 건의사항

○ 도내 지방자치단체 감면현황

구 분	감 면 대 상				
청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또는 도·시의 국경조 행사 및 주최 행사 -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-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·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 -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				
충주	<table border="0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전 액</td> <td style="padding-left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-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, 안보, 국방 등에 관한 행사 -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써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반 액</td> <td style="padding-left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사용할 때 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</td> </tr> </table>	전 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-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, 안보, 국방 등에 관한 행사 -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써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 	반 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사용할 때 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전 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-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, 안보, 국방 등에 관한 행사 -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써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 				
반 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사용할 때 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				
제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- 비영리목적으로등록된문화예술단체가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 - 시에서 후원 협찬하는 치안, 안보, 국방 등에 관한 행사 - 특수학교 및 초, 중, 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 -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				

구 분	감 면 대 상	
영동	전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- 노근리사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할 경우 -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	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 - 군 자매결연 기관·단체가 사용할 경우

○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청소년시설은 각 시·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,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이 시·군마다 상이하므로, 어린이집, 유치원, 특수학교,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따른 문화시설, 청소년시설 사용시 감면대상을 교육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준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